#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7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김기현・박성민・김소희

우재준・강선영・김승수

박정하 • 정희용 • 서지영

임종득 • 이종욱 • 윤한홍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 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등 표시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
	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
	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
	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
	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략)

② (생 략)

에	प्पिर	1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경	<u>}</u>
<u>관</u> 0	세게	제	출하	여야	한다	<u>}.</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 (국가명) 등 표시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벌칙)	①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